

NFT 아트 현황과 디지털 저작권 시대의 시사점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NFT 아트 현황
- III. NFT 아트와 저작권 쟁점
- IV. 시사점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2022-1호(제31호)

NFT 아트 현황과 디지털 저작권 시대의 시사점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약

인터넷의 발달과 저작물 창작 및 유통수단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야기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으로 인하여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과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저작자-이용자간 분쟁 지속, 인공지능 창작 등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 문제 등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과 법 사이의 간극을 회복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R(증강현실)·블록체인과 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서비스 등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유권 증명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아트 시장을 확산시킨 NFT가 저작물 이용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음. 본 글은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법 과제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제한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이슈를 분석하고자 함.

※ '문화정보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작성자의 의견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들어가며

- 인터넷의 발달과 저작물 창작 및 유통수단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야기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여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이용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과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¹⁾
 -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과 법 사이의 간극을 회복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R(증강현실)·블록체인과 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서비스 등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
- 이하에서는 최근 저작물 이용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법 과제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제한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

1) 다보스포럼('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병일(책임연구원),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II』, 2017, 1면 이하.

2)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에는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I. NFT 아트 현황

1. NFT의 발전과 NFT 아트

- NFT는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상 저장된 토큰을 말함.³⁾ NFT의 대체불가능 속성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 진본성, 유일성, 소장 및 구매이력을 증명할 수 있고,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복제가 용이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의 가치(verifiable digital scarcity)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⁴⁾
 - NFT의 대체불가능 속성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한번 생성된 NFT는 위조하거나 삭제하기가 어려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따라 NFT는 작품의 고유성이 중요시되는 미술시장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게임, 음악, 디지털 부동산 등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⁵⁾
 - NFT는 성격에 따라 수집형, 예술형, 메타버스형, 게임형, 디파이(DeFi)형이 있으며 거래량과 거래액은 수집형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함.⁶⁾ 2021년 4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의 NFT 미술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NFT 미술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예술형 NFT를 거래하기 위한 대표적 거래소로는 오픈씨(Open Sea),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이 있음.
- NFT 아트는 NFT의 속성을 기반으로 디지털로 표현한 예술 작품의 보유자 이력 등을 블록체인에서 기록한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디지털 작품 원본은 블록체인 밖의 오프체인(Offchain)이나 분산 파일 시스템(Inter Planetary File System)에 보관하고, NFT에는 작품명, 세부사항, 계약조건,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만을 포함함.⁷⁾
 - 예컨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경우 그

3)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18), 이민하,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김원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제도 간의 접점", 산업재산권 (2020); 서유경,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Law&Technology, 제17권 제3호 (2021.5);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7권 제4호 (2021.7); 캐슬린 김, 'NFT산업과 저작권', STORY Vol. 28 (2021년 7월호); 박경신, '문화예술계에 부는 'NFT' 아트 바람과 이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 저작권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21.8), 6-7면. 등 참조.

4) 윤영진, 앞의 글, 59-60면.

5) Crypto Dukedom, The NFT Revolution 2021, 2021, p. 8.

6) 최재식, 'NFT관련 기술과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 NFT-IP전문가 협의체 발표집(2022.1.27.)', p. 12.

7) 박경신, 앞의 글, 6면.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만, 크리스티에서 이 작품 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스마트 어드레스에서 일정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이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예술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현재 다양한 디지털 아트 및 컬렉션이 토큰화 되어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음.
 - NFT 플랫폼은 NFT 아트와 NFT에 표상된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2차 유통 시장을 말함. 다만, NFT 아트의 경우 거래대상은 디지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의 '링크'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캔버스 등 물리적 매체로 표현된 예술 작품인 리얼 아트는 예술적 표현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다"는 희소성이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있음.
 - 리얼 아트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열화(deterioration, 劣化, 변질)나 유통 속도 및 유통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디지털 매체로 표현된 예술 작품 (이하 "디지털 아트"라 한다)은 물리적 열화는 없고 유통 가능성은 높지만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리얼 아트에 비해 희소성이 낮음.
 - NFT 아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확립된 견해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NFT 아트는 리얼 아트의 희소성과 디지털 아트의 유통을 겸비한 이른바 하이브리드와 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음.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체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나 콘텐츠에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함.
 - NFT를 통하여 대체가 가능한 서적이나 음반을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들어 수집 가능한 아이템으로 만들거나,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미술품에 유일성 내지 희소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⁸⁾
 - NFT의 독특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은 데이터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며, NFT 소유자는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우리 법상 데이터 자체와 같은 무체물의 소유권은 불인정되고 있고,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⁹⁾ NFT는 어디 까지도 블록체인에서 발급된 토큰(증표)에 불과한 것이고, NFT를 이전하더라도 블록체인 밖에서 행해지는 권리의 이전, 즉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
 -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NFT의 법적 지위와 NFT의 거래에 대한

8) 이철남, NFT와 저작권, 저작권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21.8), 5면.

9)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란 '유체물'을 말한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리 관계 정립은 미흡한 실정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아트는 기존 콘텐츠 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저작물을 NFT로 토큰화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를 하였는지의 여부, 대상 저작물이 원본인지의 여부 등 작품을 NFT로 발행함에 있어 확인해야 할 법적 문제가 적지 않음. 이하에서는 NFT 아트의 제작 양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로서의 NFT 아트 플랫폼의 책임 여부, 권리소진의 원칙 등 기존의 저작권 법리가 NFT 아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함.

III. NFT 아트와 저작권 쟁점

1. 디지털 파일의 NFT화와 저작권

○ 오프라인에 있는 디지털 파일을 NFT화 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함.

- 누구든지 작품을 NFT로 민팅할 수 있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민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작을 대상으로 NFT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됨.
- 회화, 조각, 판화 등 유형화된 저작물 또는 리얼 아트를 민팅하여 NFT화 한다는 것은 그 실물 저작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제'하여 플랫폼의 웹사이트(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¹⁰⁾
- 디지털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인 이상 그 파일을 차원을 달리하여(2차원에서 3차원으로) 작성 내지 구현하는 것은 그 과정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복제 행위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행한 NFT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NFT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저작권법 제5조).
- 저작물과 관련 있는 메타데이터를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을 전송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NFT 생성 및 판매를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링크 연결이 필수적인데, 링크 연결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를 인정한바 있음.
- 한편, 오리지널 작품이 오프체인 NFT내에서 복제되지 아니한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오리지널 작품의 복제없이 민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팅 행위에 대한 복제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NFT의 활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데, 그 활용 방식에 따라 권리 귀속 및 권리 침해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¹¹⁾

- NFT 아트 관련 활용 방식으로는 제3자의 회화, 조각, 판화 등 유형화된 저작물(이하 '리얼 아트'라 한다)을 '디지털 트윈'으로 NFT로 민팅하는 행위, 리얼 아트 저작물 소유자가 NFT로 민팅하는 행위, 리얼 아트 저작물의 이용권자(licensee)가 민팅하는 행위, 공유 저작물(public domin work)을 민팅하는 행위 등 다양함.

10) 캐슬린 김, 앞의 글, 9면 이하;

11) 캐슬린 김, 앞의 글, 7-9면 이하;

2. NFT 아트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 저작권은 '표현'(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반면 소유권은 유체물에 대한 권리임.
 - 우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어디까지나 '저작물'이라는 창작적 표현, 즉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이며, 회화나 조각 등의 리얼 아트는 형태 있는 물건인 유체물로 소유권 대상이 되고, 소유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함.
 - 소유권은 민법에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 할 권리"(민법 제20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로 보호됨.
 - 저작권법은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을 감안하여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조정하는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을 두고 있음.¹²⁾
 - 물론, NFT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NFT 아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리얼 아트가 '예술'자체의 거래 규범을 형성하고, NFT 아트는 유일하고 희소성이 높다는 점에서 리얼 아트와 공통점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35조를 유추 적용 가능할 것임.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등을 이유로 재판매권(일명 추금권, Artist' Resale Right)을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NFT의 기초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거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아티스트에게는 'NFT 아트'를 창작하는 큰 매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NFT 아트와 권리소진 원칙

- 서적이거나 음반 등 유형 매체의 거래에 적용되는 배포권 소진(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이 NFT 거래에 적용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¹³⁾
 - 권리소진이론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 제공한 그

12) 전시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하면 유체물인 미술품 원본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전시가 가능하다.

13) 윤영진, 앞의 글, 66-67면.

저작복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전전 유통 내지 배포에 대하여 자기의 배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임.¹⁴⁾

- 전통적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송을 통해서 항구적인 통제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만, 항구적 베이스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본을 전송하거나 이용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상품에 바탕을 둔 전통적 경제체제와는 달리, 서비스와 정보의 이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체제에서는 새로운 거래목적은 가진 디지털정보가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결제되는 거래방식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법규범이 요구되고 있음.
- 저작물 파일의 원본 없이 메타데이터만 거래되는 NFT가 적용된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기존 권리소진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디지털자산인 NFT의 2차적 거래와 유통은 유일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권리소진 원칙 적용 가능성 검토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NFT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

- NFT 아트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아트가 게시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하여 OSP 책임과 면책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¹⁵⁾
- OSP에게 방조책임 등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임.¹⁶⁾ 예컨대,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유튜브와 같은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14) 김인철, “최초판매의 원칙에 관한 재고”,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2014.4), 101면 이하.

1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이미지링크.

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분석으로, 손승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규제에 대한 정합성 검토”,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 최경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재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5권, 사법발전재단 2017; 이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LAW & TECHNOLOGY 제15권 제3호(통권81호), 2019 등 참조

저작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음.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O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¹⁷⁾

-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단순도판, 캐싱,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로 분류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102조).
 - NFT 거래는 저작물 자체의 거래라기보다는 저작물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 기록의 거래라 할 수 있고, 탈중앙화 서비스로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장 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메타데이터 NFT 아트 콘텐츠 자체는 해당 플랫폼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회원에게 게시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¹⁸⁾
- NFT는 탈중앙화라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NFT 아트 콘텐츠 자체는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측면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법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저작권 침해 게시물 발견의 특징(notice)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되, 신속 대응 (takedown)은 OSP의 부담이라는 면책규정(Safe Harbors 면책)에 의한 이익 부담의 균형이라는 법정정책적 고려는 인터넷/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을 인정하면서, 기술 혁신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창출한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임.

17)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NF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OSP책임 및 면책에 대해서는, 송선미,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이슈리포트 2022-05, 한국저작권위원회(2022) 참조.

18) 캐슬린 김, 앞의 글, 10-11면; 박경신, 앞의 글, 7면;

IV. 시사점

- 메타버스, NFT,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 환경은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인터넷 등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역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비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¹⁹⁾
 - 블록체인 기반 NFT와 메타버스가 미래 핵심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NFT의 디지털 자산 여부와 변동성 높은 가상자산 기반의 거래환경은 NFT거래시장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NFT 시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최근 NFT 시장은 기존 게임이나 예술 산업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특히, 작품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NFT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시장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NFT와 전통 산업의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의 확대 모색을 위해서는 NFT의 법적 지위와 NFT의 거래 대상 및 권리 관계의 정립과 NFT 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제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

19) 예컨대,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라 한다)이라고 하는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를 발표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2021. 5, 181면 이하 그리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한영·권병규·차성민,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상기통상전략연구 21-01, 2021, 179-241면 참조.